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6.(월) / 총 18매(본문6)
부처 합동	국토교통부	도시 정책과	·과장 정의경, 사무관 최보람, 사무관 오원택 ☎ (044) 201-3706, 3710, 3709
		녹색 도시과	·과장 김명준, 사무관 지현근 ☎ (044) 201-3742, 3751
	기획재정부	국토교통 예산과	·과장 신상훈, 사무관 김지민 ☎ (044) 215-7330, 7332
		국유재산 정책과	·과장 이용욱, 사무관 신동선 ☎ (044) 215-5150, 5152
	국방부	시설 기획과	·과장 유동준, 사무관 송영석 ☎ (02) 748-5810, 5861
	행정안전부	재정 정책과	·과장 김장호, 사무관 김상길 ☎ (02) 2100-3509, 3512
	환경부	자연생태 정책과	·과장 유승광, 사무관 황의정 ☎ (044) 201-7210, 7224
	산림청	도시숲 경관과	·과장 김주열, 사무관 예건희 ☎ (042) 481-4223, 4224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4.17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, 정부차원 적극 지원

-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(116km²)을 선별하고,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%, 5년간 지원(최대 7,200억원 규모)
-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,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도 병행

□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*에 따른 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** 실효(일몰제)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

** 도시계획시설은 도로, 공원,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

- 현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,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(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)되도록 하였으나,

-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,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.

□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,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

* '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km², 그중 공원은 397km²로,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

- 특히,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,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'미집행 해소방안'을 마련했다.

□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.

추진 방향	“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,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”
추진 방안	①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②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③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

-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(가칭 우선관리지역)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,

*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,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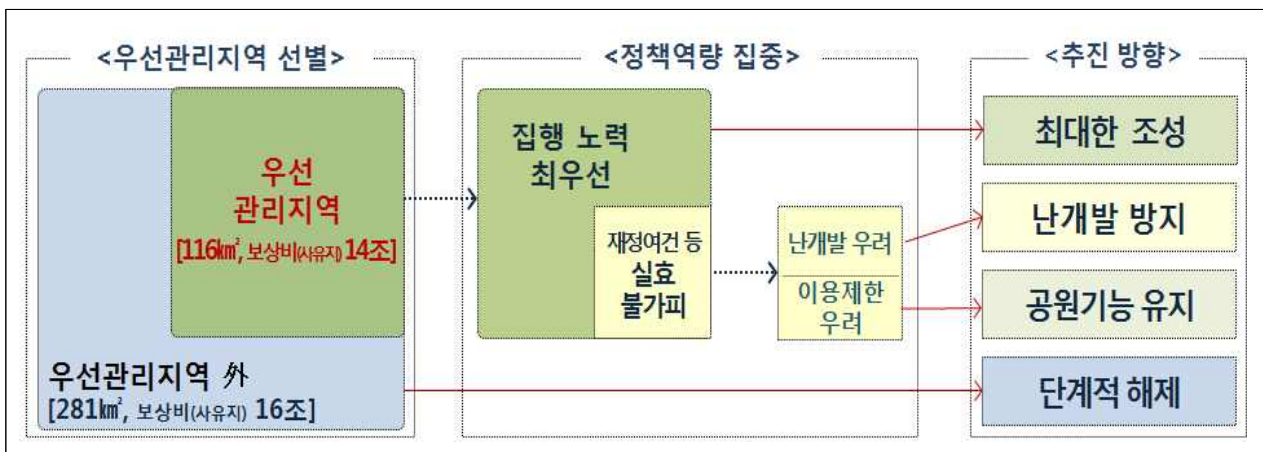
-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.

추진방안 ①: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

【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】

-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(개발제한구역, 보전녹지·산지 등), 물리적 제한(표고, 경사도)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,
- 지자체에서 공법적·물리적 제한과 함께,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.
- *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(397km²)의 30% 가량인 116km²

【참고】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



【참고】 우선관리지역 선별 사례



【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】

-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,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,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지방채정을 활용한 집행 가능성 제고

- 정부는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성격과 함께,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도 향유하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,
 -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%를 지원(최대 7,200억원)하고,
 -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(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%내 한도 설정)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.

②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

- ‘도시재생’, ‘지역개발사업’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*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,
 - * 도시재생,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 부여 등
 - ‘도시생태 복원사업(환경부)’, ‘도시 숲 조성사업(산림청)’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- ▲ (도시생태 복원사업) 도시생태축 단절·훼손 지역,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
 - ▲ (도시 숲 조성사업)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, 생활환경숲, 산림공원, 가로수, 명상숲 조성 등 추진

- 아울러, 개발제한구역 내 ‘주민지원사업’과 ‘훼손지 복구사업’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.

- ▲ (주민지원사업)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공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
- ▲ (훼손지 복구사업) 개발제한구역을 해제·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 녹지로 복구(개발면적의 10~20%)하는 사업으로,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

③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

-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'사용'할 수 있는 '임차공원'을 도입하고,
 - 공원 내 자연휴양림,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
- 또한, 시·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(광역시)에서 공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'광역시공원'을 도입*하고,
 - * 현재 '도(광역시)'는 공원 조성 주체가 아님
 - 시민·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.

추진방안 ②: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

【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】

-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*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- * 비시가화지역(녹지지역, 비도시지역)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용도·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
- 또한,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,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【비(非)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】

-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
- 다만,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·시행할 계획이다.

추진방안 ③: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

- 마지막으로,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, 시설 결정 기준*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,
 - * 1인당 공원면적 지표 개선,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조기수립(3개월 내)
 -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.
 - *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,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
- 한편,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, 관계부처,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·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최보람 사무관(☎ 044-201-3710), 녹색도시과 지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7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

2018. 4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현황	1
II. 그간 경과 및 문제점	2
III. 장기미집행 해소방안	3
1.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	4
2.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	7
3.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	9
IV. 향후 추진계획	10

□ 현황

- 도시계획시설은 도로, 공원, 학교,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(52종)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

*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, 해당 토지는 타용도로 개발 제한(재산권 제한 발생)

-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3km²(약 7만여건, 서울 1.38배)로서 집행 시 총 145조원 소요예상('16.12.기준)

-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*은 실효제**에 따라 '20.7.부터 효력이 상실(703km², 116조원)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연착륙 대책마련 필요

* '20년 실효대상 시설 중 공원이 397km²(40조)로 면적 56%, 사업비 34% 차지

** '99년 헌법재판소 결정(국민 재산권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모두를 실현하기에 적정한 기간을 규정할 필요) 이후 도입('00.7.)

《주요시설별 미집행·실효대상('20.7.) 현황》

('16.12. 31.기준, km², %)

구 분	시설 총 면적	집행면적	미집행 시설 면적		
			전체	10년 이상 미집행	'20.7. 실효대상
계	7,356.1 (100)	6,099.3	1,256.9	833.2 (100)	703.3 (100)
공원	942.2 (12.9)	437.3	504.9	433.4 (52.0)	396.7 (56.4)
도로	1,795.1 (24.4)	1,440.5	354.6	242.3 (29.1)	188.7 (26.8)
기타*	4,618.8 (62.7)	4,221.5	397.4	157.5 (18.9)	117.9 (16.8)

* 기타: 녹지, 유원지, 광장, 학교, 체육시설 등

□ 발생사유

- 과거 지자체가 민원해소, 시가지 개발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과다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,
 - 결정 후에는 지자체 재정여건 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, 미집행 시설이 양산된 측면
- 또한, 상위계획·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시설 확보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해제도 일부원인

II

그간 경과 및 문제점

□ 그간 추진경과

- '99년 현재 결정 취지에 맞추어 사유 재산권과 공익간 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 해제 등 미집행을 해소(집행·해제)하기 위한 노력 추진
 -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('02.1.), 지방의회 해제권고제('12.4.), 해제 가이드라인('14.12.),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('17.1.) 등 도입
- 공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('05.10.), 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공원('09.12.) 등 도입

□ 문제점

- (지자체의 소극적 입장) 상당수 지자체는 재원확보 어려움, 해제에 따른 민원발생·특혜논란 등으로 장기미집행 해소에 소극적인 측면
 - 그동안 지자체장·지방의회 등이 임기 내 문제에만 집중하여 '20년 실효에 관심이 부족했던 점도 작용
- (실효 부작용) 실효 시 재산권 제한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,
 - 공원의 경우 미집행임에도 실제로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여 왔던 곳에 출입이 제한되거나, 난개발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

《공원 실효 시 부작용 예시》



(등산로 폐쇄)



(난개발)

- ※ 실제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시설은 실효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
- 예외적으로 미집행 도로를 사실상 도로처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효 시 주민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민법(주위토지통행권) 등에 따라 통행로 확보가능

추진
방향

집행 촉진 및 실효 부작용 최소화

-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집행 노력 최우선
 -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고려, 최대한 조성
-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

추진
방안

①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

-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
-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(재정지원 및 제도개선)

②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

-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
- 비(非)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
(과도한 재산권 제한 해소 도모)

③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

- 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
- 사업 시행 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

1.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

- ❖ 조성이 필요한 지역(우선관리지역)을 선별하여, 정책역량 집중
(최대한 조성토록 노력하고, 실효가 불가피할 경우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)
- ❖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성
토록 국가 역할 확대(지방채 이자 지원,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등)

□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

- '20. 7. 실효대상 시설 규모(703km², 116조원)와 지자체 재정여건을
고려할 때 실효 전에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
-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이용이 많고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
지역*(가칭 우선관리지역)을 선별하여, 정책역량을 집중

* '20. 7. 실효대상 공원 중 116km²(보상비(사유지) 14조)로 추정(지자체 협의를 통해 8월 확정)

- 지자체가 우선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선별토록 지원(LH 참여)하는
한편, 선별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*을 수립토록 규정

* 지자체가 시설별 집행시기, 자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·공고하는 법정계획
(우선관리지역 중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유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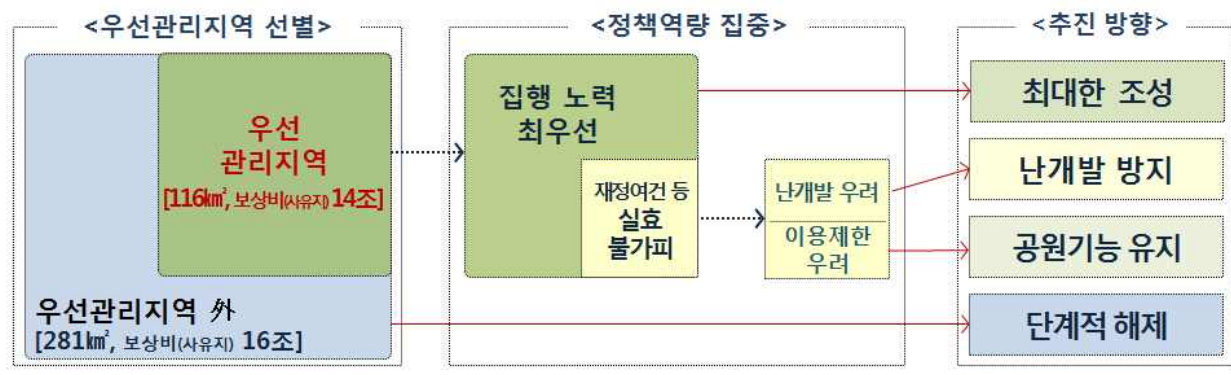
(가칭)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

△ (개념) 미집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
실효될 경우 주민 이용 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

↓
52개 시설 중 공원

△ (범위) 공원 중 ①공법적·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, ②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

△ (활용전략)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원을 최대한 조성



□ 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

① 지방재정을 활용한 집행가능성 제고

- 지자체 재정여건과 공원 특성(현재·미래세대를 위한 자산) 고려 시, 지방채(현재·미래세대 모두 비용부담)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측면
- 다만, 우선관리지역 규모(116km², 14조원)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,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국가 역할 확대 필요

《전국 지방채 발행현황 및 추가발행 가능규모 등('16년 기준)》

구분	예산액	現 지방채 발행누계	채무비율	지방채 추가발행 가능규모		우선관리지역 규모 (보상비/사유지/면적)
				채무비율 20% 가정	채무비율 25% 가정	
전국	224조원	26.4조원	11.8%	19.5조원	29.9조원	13.6조원/115.9km ²
특·광역시	77조원	15.1조원	19.8%	1.3조원	4.4조원	6.4조원/28.9km ²
기타 시·군	147조원	11.3조원	7.7%	18.2조원	25.5조원	7.2조원/87.0km ²

* 채무비율 25%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'주의' 단계로 관리(지방재정법)

- 우선관리지역을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
- (지방채 이자 지원)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자 50%(최대), 5년치를 국고에서 지원*(기재부 협조)
- * 국고지원 규모(이율 2.4% 가정)는 최대 7,200억원으로 추정되며, 특·광역시와 기타 시·군의 발행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약 3,300억원 규모로 추정
- (지방채 발행 확대)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 추가발행*도 허용(행안부 협조)
- * 지방채(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%내 한도설정) 추가발행은 현재 행안부 승인 사항이나, '19년부터 지자체로 결정권한 이양 예정('18.下, 지방재정법 개정, 행안부)

②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

- 지방재정을 활용한 지자체 노력과 함께,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국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
- 노후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인근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

- 현재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도시재생·지역개발사업(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* 등) 등에 대하여,
 - *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매년 15~20곳·250억원 선정·지원
-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미집행 시설을 포함토록 권고(가이드라인 등에 반영)하고, 포함될 경우 평가에서 가점 부여
- 개발제한구역(GB) 내 '주민지원사업*'과 '훼손지 복구사업**'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,
 - * (주민지원사업)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미집행 공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
 - ** (훼손지 복구사업) GB를 해제·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사업으로,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('18. 上, 개발제한구역법 개정)
 - ☞ 최근 5년간('13.~'17.) GB 해제물량 고려 시, 연평균 0.3km² 공원 조성 가능
- '도시생태 복원사업', '도시 숲 조성사업' 등과 연계하여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(환경부·산림청 협조)

③ 기타 방안

- (국공유지 교환)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(공원)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,
 - 공원 내 국유지 관리청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, 필요 시 지자체와 관리청간 합동 회의 개최 등 교환 협의도 지원(기재부 협조)
 - * 공원 내 보존가치가 높은 사유지와 경제적가치가 동일한 국공유지간 교환도 추진
- (공원 유형 확대)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
 -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하여 조성할 수 있는 '임차공원'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내 수목원·휴양림 등의 설치도 허용
 - 시·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(광역시)에서 공원 지정·예산 지원할 수 있는 '광역시도시공원'을 도입('18. 下, 공원녹지법령 개정)
- (신탁제도 활용) 시민·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 유도

2.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

- ❖ (우선관리지역) 적극적인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, 재정여건 등으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
- ❖ (우선관리지역 外) 불요불급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효 전 단계적 해제

□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

① 영향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

- 우선관리지역에 해당되나, 재원한계 등으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대책을 강구
- 특히, 공원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 이용현황·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,
 - 성장관리방안·지구단위계획 수립, 경관지구 지정 등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*토록 규정('18.3. 장기미집행 해소 가이드라인 개정완료)

* 절차: 주민·지방의회 의견청취 → 관계기관 협의 →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수립·결정

② 공원 내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

- '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,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
- * 공원 실효대상에서 국유지를 제외('17.3. 공원녹지법 개정발의)하는 방안은 '국유지 활용제한, 필요한 지역에 한해 재지정 필요'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에서 반대(기재부 등)
-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능·집단화 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 후 공원 재지정 등을 추진(기재부, 국방부 등 협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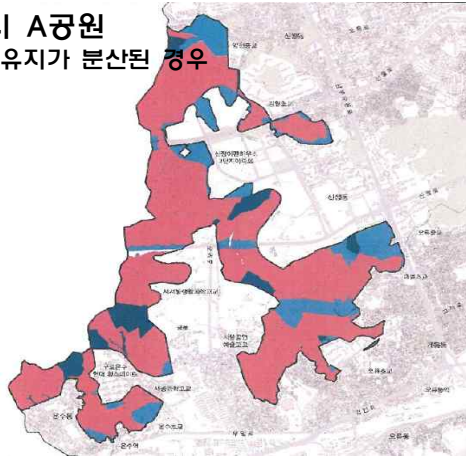
* '20년 실효대상 공원 내 국공유지는 27%(397km² 중 107km²) 수준

** 국유지 중 산림청 부지는 산림보전 및 녹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·관리 강화

《공원 내 국공유지 분포현황(사례)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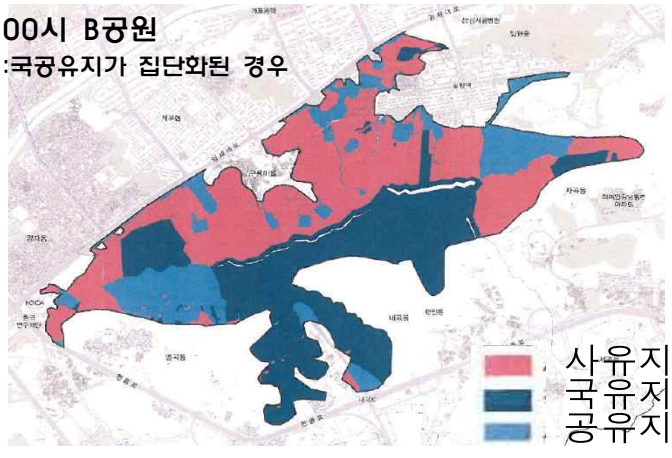
00시 A공원

:국공유지가 분산된 경우



00시 B공원

:국공유지가 집단화된 경우



구분	소계	국유지	공유지	사유지
00시 A공원	16천 m ² (100%)	1천 m ² (7%)	2천 m ² (12%)	13천 m ² (81%)
00시 B공원	5,351천 m ² (100%)	2,002천 m ² (37%)	1,043천 m ² (20%)	2,306천 m ² (43%)

☞ 국공유지가 산재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,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 재지정을 추진하고, 국가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

□ 비[非]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

- 비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단계적 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,
 -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검토하여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유도
- 아울러, 불요불급한 시설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도록 시설별 확보기준 등 관련규정의 적정성도 지속 검토·보완*

*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상위계획 지표(국토종합계획 상 1인당 공원면적)의 탄력적 적용 등('17.9. 도시계획지침 개정완료)

※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·시행

3.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

- ❖ 최초 시설 결정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고, 이미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향후 미집행 양산 방지
- ❖ 사업 시행 후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 취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

□ 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

-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시설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*

* 시설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인구추정방식 개선(통계청 추정인구 105% 내 계획, '17.6. 도시기본계획지침 개정), 1인당 공원면적 지표 개선 등

-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①조기수립(결정 후 2년→3개월내), ②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집행절차를 보완하여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고,
 - 도시계획 재정비(5년 주기) 시, 계획 ③타당성의 재검토 범위를 확대(10년이상 미집행시설→3년이상)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개선

* ①: '17.12. 국토계획법 개정완료, ②·③: '17.9.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완료

□ 사업 시행 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

- 도시계획시설의 집행·미집행 기준은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(국토계획법 제47조*)로서, 실시계획 인가 시 실효 대상에서 제외

*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(보상계획 공고 등)를 사업시행으로 규정

- '20.7. 실효가 도래함에 따라,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계획 인가만 하고 보상을 장기간 미루는 등 실효제도 취지가 반감*될 우려가 있는 바,

* 예) 00시, 도시계획도로(2km, 266억)에 대해 '10년 인가 후 '16년까지 33%만 보상

-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,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('19.上, 국토계획법개정)

추진 과제	관련기관	일정
1.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		
·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	국토부·지자체	~'18.上
·선별된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지원 - 지방채 이자 50% 지원 - 지방채 추가발행 허용 - 현행 국고 지원 사업 등과 연계 - 기타 공원 조성 유도 위한 제도 개선	기재부 행안부 국토부·환경부·산림청 국토부	~'28. ~'23. ~'20. ~'18.下
2.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		
·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- 영향분석 도입 -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- 국유지에 대한 공원 재지정 등 협조	국토부 지자체 기재부·국방부 등	~'18.3. ~'19.下 '19.下~
·비(非)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-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- 조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유도	국토부 국토부·지자체	~'19.上 ~'19.下
3.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		
·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	국토부	~'19.
·사업 시행 시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 규정	국토부	~'19.上